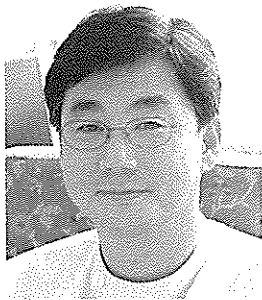


■ 인터뷰

의료분쟁조정법(안) 확립 의료인, 환자간 불이익 사라지길



장 계 봉
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

▶ **곧 의료분쟁조정법(안)이 입법
화 된다. 현재 논의중인 법(안)
에 치협의 주장이 많이 수렴되
었는가?**

법(안) 초안 마련에 있어 의료단체별로 의료배상책임 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(민간사보험) 가입의 선택과 가입의 의무, 의료단체별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상당부분 치협의 주장이 반영되었다.

▶ **의료단체별로 의료배상책임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(민간사
보험) 가입 선택의 필요성은?**

치과가 의과보다 의료사고의 빈도 수, 사고액수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. 만약 공제조합으로 모든 의료단체가 한 곳에 가입된다면 의료종목별로 달리한다해도 전체 사고율이 높아지면 치과의 부담도 자연히 많아져 불합리하다고 본다. 따라서 각 의료단체별로 가입의 선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.

▶ **현재 치협의 의료배상책임보험현황은?**

현재 치협은 민간사보험인 현대 Med-In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회원의 수도 점차 늘고 있다. 1년에 부과하는 본인 부담금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앞으로 진료과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.

▶ **의료배상책임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가 왜
필요한가?**

모든 의료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의료분쟁조정법(안)의 올바른 정착이 가능한 것이다. 모든 의료인이 가입했을 때 환자가 어느 병원을 이용하든지 간에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.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환자들이 일일이 가입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적지 않을 것이다.

▶ **의료단체별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은?**

치과, 의과, 한의과, 약과 등 의료단체별로 그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바람직 할 것이다. 가령 치과적 문제를 의과적 문제로 일괄 다뤄진다면 문제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. 그 구성원에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, 소비자단체 등도 필요할 것이다. 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된 권한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.

▶ **의료사고 소멸시효기간(3년)에 대한 의견은?**

의료분쟁조정법(안)에는 의료사고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좀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기간의 연장으로 의료인의 배상책임이 더 생길 수도 있지만, 치과의 보철치료의 경우 치료 후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 후에 일어나는 의료분쟁은 의료분쟁조정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맹점이 있다.

▶ **처벌특례조항의 업무상과실 치상죄 외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포
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?**

업무상과실 치사죄도 처벌특례조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다. 환자 상태에 따라 사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. 특히 중요한 것은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다. 자기 방어적 회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.

▶ **무과실 의료사고 피해보상금(1천만원 한도)의 확충 및 원인불명
등 피해보상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료단체들의 주장이 있
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?**

물론 의료인 입장에서는 둘 다 시행되는 게 좋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므로 법(안)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.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법(안)에서 제외되기 보다 보상 범위가 적더라도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시행 후 차차 범위를 넓혀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.

▶ **기타 의견 및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가?**

의료분쟁조정법(안)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의료인과 환자들간의 불이익이 사라지길 바란다.

〈신경철 기자〉